

전주지방법원 2024. 6. 17 선고 2023나136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전주지방법원 2024. 6. 17 선고 2023나13629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4. 13 선고 2022가단55253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피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상

변론종결 2024. 4. 29.

판결선고 2024. 6. 17.

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. 4. 13. 선고 2022가단55253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와 B 사이에, 익산시 H 전 2,673㎡에 관하여 2021. 9. 10. 체결된 매매계약을 52,630,00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52,630,00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‘이유’ 부분 제3행의 “2018. 3. 11.”을 “2018. 3. 22.”로 고쳐 쓴다. ○

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2행의 “회사”를 “업체인 U의 운영자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행, 제4쪽 각주 1, 제4쪽 제4행, 제9행, 제11쪽 제13행의 각 “표1”을 각 “표 적극재산”으로, 제4쪽 제1행의 “표2”를 “표 소극재산”으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“증인”을 “제1심 증인”으로, “이 법원”을 “제1심 법원”으로 각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. 『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근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』

-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의 “이 사건 회사를”을 “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”로 고쳐 쓴다.
- 제1심판결 제6쪽의 제14행, 제16행, 제17행, 제19행, 제21행, 제7쪽의 제10행, 제18행, 제19행, 제20행, 제8쪽의 제5행, 제8행, 제10쪽 아래에서 제2행, 제11쪽 제10행, 제20행의 각 “B”을 각 “V”으로 고쳐 쓴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규, 판사 천무환, 판사 구나영